



문화체육관광부



수신 종교단체 대표
(경유)

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12.31.) 관련입니다.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3차 접종률 제고를 비롯한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효과로 최근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는 있으나,
 - 병상확보 등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, 빠르게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우세종화 경향,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위중증, 치명률과 유행규모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, 종전 **방역강화 조치의 연장(2주)이 필요**하다고 판단하면서,
 - 영화상영 및 공연시간으로 인해 이용시간 제약이 상대적으로 큰 영화관공연장이나, 상시 많은 인파가 몰려 시설 내 밀집도가 높은 백화점-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적용 등 일부 시설 등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<주요 조치 사항>

구분	주요 내용
영화관 공연장	▲ 22시-익일 05시 운영 중단 ↳ 단,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(이용) 가능하되,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
백화점 대형마트*	▲접종증명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적용 ↳ 2022.1.10.(월) 0시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 적용(2022.1.10.~2022.1.16.) * 대규모 점포 및 3,000㎡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(예: 하나로마트)에 한해 적용
방역패스	▲방역패스 적용 대상(연령) 확대 시기 변경 ↳ 12세 이상인 자(종전: 2022.2.1. / 변경: 2022.3.1.(계도기간: 2022.3.1.~2022.3.31.) ※ 방역패스 관련 확인방법, 유효기간 등 제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 준수

가. 적용기간: 2022.1.3.(월) ~ 2022.1.16.(일) 24시

나. 적용지역: 전국 17개 시·도*

- *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다. 경과규정 등

-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: 2022.1.17.(월) 05시까지 적용
- ② 백화점·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*: 2022.1.10.(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 - * 계도기간: 2022.1.10.(월)~ 2022.1.16.(일)
- ③ 방역패스 적용 대상(연령) 확대*: 2022.3.1.(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 - * 계도기간: 2022.3.1.(화)~ 2022.3.31.(목)
 - * 적용기간,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
1)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

- **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(17종)**
 -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, 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(내국인)
 - 식당·카페,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멀티방(오락실 제외), PC방, (실내)스포츠경기(관람)장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파티룸, 도서관, 마사지업소·안마소, **상점·마트·백화점** * 대규모 점포 및 3,000㎡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대상
- **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(13종) 및 종교시설**
 -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오락실, (실외)스포츠경기(관람)장, 실외체육시설, 숙박시설, 키즈카페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이미용업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, 종교시설
- **고위험 사업장(2종):** 콜센터, 물류센터
- **법적근거:*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- **조치내용:**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1: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
2) 모임·행사

- **법적근거:*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- **조치내용:** 방역지침 의무화
 - **(사적모임)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**
 - * 식당·카페 이용 시 '접종완료자 등' 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**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(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)**
 - **(사적모임 외 모임·행사)** *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,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**必**

- (1~49명)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·행사 가능
- (50~299명)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
- (300명 이상)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,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(지역)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·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
 - ↳ 단, **2021.12.16. 0시 이전** 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,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·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(가급적 취소 내지 연기, 축소하여 개최 권고)
- ※ 접종완료자 등: 접종완료자, 완치자, PCR음성확인서 소지자, 18세 이하인 자(2022.3.1.부터는 11세 이하인 자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(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)
- ※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가능하며,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
- ※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(시합 등) 가능

<모임·행사(예시)>

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각종 (지역)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
- ※ 결혼식장에 한해 밀집도 제한 조치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
- (시험)수험생 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, 대기자 공간 마련, 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
 - 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

붙임2: 전국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3) 교통시설

- 대상시설: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 - 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0199(2021.6.28.)에 의한 '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' 계속 적용

4) 국공립시설

- 소관부처·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
 - ※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(이용)특성, 방역관리 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, 국공립시설(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) 탄력적 운영가능

5) 사회복지시설

○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

6) 사업장

○ 유연근무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 적극 활용,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,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

7) 학교(등교)

○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·과밀학교 밀집도 2/3*으로 조정하되,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·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

* 초등학교(1, 2학년 포함) 밀집도 5/6, 중·고등학교 밀집도 2/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.20(월)부터 적용(학교별 탄력 적용), 유·특수돌봄 및 소규모·농/산/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

3.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, 귀 종교단체에서는 방역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 및 이용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방역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.
2.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.
3.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. 끝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

주무관 김해강 행정사무관 차혜란 종무1담당관 전결 2022. 1. 3. 강성태

협조자 종무2담당관 윤양수

시행 종무1담당관-19 (2022. 1. 3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3층 / <http://mcst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2328 팩스번호 044-203-3462 / mostovoi10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